

#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추진 계획

## I. 목 적

2023학년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학교 배정이 되도록 함.

## II.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75조, 제9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고시 제2022-18호, 행정과-9441, 2022.10.5.)

## III. 기본방침

- 익산시 관내 중학교를 학교군(익산시 가지역)과 중학구(익산시 나지역)로 구분한다.
- 학교군(익산시 가지역)에 해당하는 14개교(남여공학 9개교, 남학교 2개교, 여학교 3개교)에 대해서는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방식으로 배정한다.
- 공정한 추첨 배정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컴퓨터 완전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정한다.
- 중학구(익산 나지역)는 추첨 없이 해당 중학구별로 배정한다.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중학교 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입학추첨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IV. 시행 방법

- 관할 학군 및 학구의 입학 배정은 교육장이 관장 실시한다.
- 교육장의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입학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입학을 포기한 자 또는 퇴학한 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한 익년도에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서 입학배정을 받을 수 있다.
- 배정원서 제출 후 거주이전으로 추가지원 또는 추가등록 등의 사유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용 능력이 허용되고 추천배정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접수 처리한다.
- 체육특기자는 육상, 양궁, 수영,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체조, 씨름, 배드민턴, 테니스(정구), 태권도, 유도, 펜싱, 레슬링, 역도, 검도, 사격, 리듬체조(여), 롤러스케이트, 정구, 무용, 골프, 복싱의 26개 종목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개최를 승인한 종목을 입상한 자로 한다.
- 무시험 진학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리 하에 선복수지원 후 추천 중학교 배정 프로그램 설계를 한 전산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한다.
- 배정원서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류검토위원을 위촉하여 추진한다.

## V. 지원 자격 및 방법

### 1. 지원 자격

- 가. 전 가족이 익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익산시 학교군(익산 가지역)과 중학구(익산 나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익산시 학교군 및 중학구 거주자
- 다. 2022학년도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에 재적(학)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2022년 11월 11일 현재 익산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등)

### 2. 지원 방법

- 가. 학교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학교군의 14개 중학교를 남학생11개교, 여학생12개교 까지 모두 지원
  - 남학교: 이리동중, 이리남중, 익산지원중, 이리북중, 이리영등중, 익산어양중, 익산부송중, 익산부천중, 이리중, 남성중, 원광중.(11개교)
  - 여학교: 이리동중, 이리남중, 익산지원중, 이리북중, 이리영등중, 익산어양중, 익산부송중, 익산부천중, 이리중, 이리남성여중, 원광여중, 이일여중.(12개교)
- 나. 중학구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중학구의 12개 중학교 중 지정된 중학교에 지원

## VI.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 방법

### 1. 배정 방법

#### 가. 일반 배정

- 1) 학교군: 학교군 내 중학교를 지원 순위에 따라 완전 무작위 전산 추첨 배정
- 2) 중학구: 학구 내의 지정된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

#### 나. 우선 배정

##### 1) 체육특기자

- 가) 대상: 2023학년도 익산시 통학구내 중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체육특기자
- 나) 배정방법: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의 별도 계획에 따른 심사 결과 배정된 중학교에 무추첨 우선 배정

##### 2) 특수교육대상자

- 가)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판정을 받은 학생
- 나) 배정방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배정된 중학교에 무추첨 우선 배정

##### 3) 지체장애인

- 가) 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에 해당하며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정상적인 통학에 지장이 있는 학생
- 나) 배정방법: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에 가까운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소년·소녀가장 학생(가정위탁보호학생)

- 가) 대상: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학생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자
- 나) 배정방법: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1희망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

##### 5) 중대질병 대상자

- 가) 대상: 중대한 질병(지체장애,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으로 치료 중인 자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무추첨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나) 배정방법: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1희망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

## 6)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학생

- 가) 대상: 18세 미만(2005. 1. 1. 이후 출생자)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세 번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함. 단, 세 번째 자녀는 해당 가정 내의 셋째가 아닌 만18세 미만의 자녀들 중 세 번째 자녀를 의미함.
- 나) 배정방법: 다자녀 가정 학생 중 세 번째 이상 자녀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재학(현재 **중학교 1,2학년**)하는 학교를 1희망 지원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무추첨 배정**

## 7) 교육지원대상자

- 가)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지원자
- 나) 배정방법: 익산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군은 1희망 중학교에,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에 무추첨 배정
- 다) 심사: 전북서부보훈지청(보훈과)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선배정 함.(전북서부보훈지청보훈과 ☎850-37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대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기타 배정

- 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과 다음 세부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 (동학년 간이 아닌 선후배 간 관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또한 이 원칙을 적용함)**
- 가) 일반 추첨 배정이 완료된 후 학교폭력 동일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가해학생을 배정된 지망교 다음 순위 학교로 강제 재배정함
- 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일교 배정 학교가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최하 순위 지망교일 때는 피해학생의 배정교를 바로 앞 순위 지망교로 재배정함
- 다) 선후배 간 관계에서의 학교폭력(재학생과 신입생)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차순위에 배정함(단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같은 학교 배정 가능)[서식 17참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찰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대상: 2013. 4. 1. 이후 발생한 학생폭력 사안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조치 된 학생
- 제외 대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외(서면 사과,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 2) 검정고시 출신 학생,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는 익산교육지원청에 중학교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익산 관내 초등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 배정함
- 3) 쌍둥이 학생(배정원서에 반드시 기재)  
동일 중학교에 배정을 신청한 경우 배정되는 학교에 함께 배정 가능
- 4) 배정 희망은 이중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임의 배정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와 보호자가 짐
- 5) 2022학년도 이전에 중학교를 배정 받은 자가 입학할 포기하였거나 재학중 유예(퇴학)한 자로서 재지원 하였을 경우에는 2022학년도 이전에 배정된 중학교에 재배정 함
- 6) 학교장전형 중학교(특성화중학교 / 자율중학교) 입학 예정자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변동 상황이 발생(탈락자, 입학 포기 등)할 경우 추가 접수기간(2022.12.6.) 이전에 즉시 원서 제출
- 7) 타 시도(군) 거주 이전 예정자
  - 가) 중학교배정 이전: 추가접수기한(2022.12.6.) 이전에 이전할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후 배정원서 이관

(예시)

### ○ ○ 초 등 학 교

수 신 자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 유) : 교육지원과장

제 목 :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자 배정원서 이관 요청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자중 (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로 이주한 다음 학생의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배정원서를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전 재적학교	현 재적학교	이전할 주소 (연락처)	이관 교육지원청

- 붙임 1. 신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1부(인편 제출).  
2. 신 주소지 전입학교의 재학증명서 1부(인편 제출). 끝.

나) **중학교배정 이후**: 일단 익산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받고 이전할 거주지관할 교육지원청에서 2월중에 추가로 배정받아야 함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예시)

## ○ ○ 초 등 학 교

수 신 자 :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 유) : 교육지원과장

제 목 :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자 재배정원서 제출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 이후 ( )교육지원청 관내 거주지로 이주한 다음 학생의 재배정원서를 제출하오니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배정중학교	현 재적학교	이전한 주소 (연락처)	이관 교육지원청

- 붙임 1. 재배정 원서 1부(인편 제출).  
2. 배정 통지서 1부(인편 제출).  
3. 신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1부(인편 제출). 끝.

※ 거주지 이동자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전출 시·군교육장에 중학교 재배정을 의뢰한다.

## 2. 전산추첨 방법

### 가. 일반사항

- 1) 추첨은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 전산추첨 지침」에 의한다.
- 2) 1순위 희망자로 배정하여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여학생인 경우) 순서로 취한다.
- 3) 특정학교 1순위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1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학생은 2순위 희망교 추첨에서 1차 추첨을 하지 않은 희망자보다 우선권을 상실한다.
- 4) 추첨은 프로그램을 설계한 전산처리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 나. 전산추첨 방법

- 1) **중학교 1순위 지원자**를 특정번호 열세(13)자리(주민등록번호)에 “소수”(입학추첨 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한 연속하는 세(3)자리 수)를 곱하여 나온 수를 앞에서 여덟 번째 자리부터 여섯(6) 자리를 취하고, 다시 “난수”(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한 연속하는 세(3)자리 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를 뒤에서 일곱(7)자리를 취한다.

이때 특정번호 앞의 여섯(6)자리에서 소수에서 생성된 여섯(6)자리 수와의 뺄 값의 절대값을 찾고 특정번호 뒤의 일곱(7)자리에서 난수에서 생성된 일곱(7)자리 수와의 뺄 값의 절대값을 찾는다.

- 2) 위에서 추출한 여섯(6)자리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리이동 수**”(입학추첨관리 위원에서 추첨한 이동숫자(1-5)를 적용하여 특정번호의 앞자리 여섯(6)자리 수를 추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뒤의 일곱(7)자리에 “**자리이동 수**”(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한 이동숫자(1-5)를 적용하여 특정번호의 뒷자리 일곱(7)자리를 추출하여 두 특정번호수를 텍스트 붙이기를 하여 수를 취한 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이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예시1)**

가) 특정번호 931117-1544218의 경우

9311171544218 \* 소수(예:235) = 2188125312891230에서 여덟자리 부터 여섯자리 **312891**을 취한다.

나) 312891 \* 난수(예:468) = 146432988에서 뒤에서 일곱자리 **6432988**를 취한다.

다) **특정번호 앞자리는** | 931117 - 312891 | = **618226**의 계산값을 산출한다.

라) **특정번호 뒷자리는** | 1544218 - 6432988 | = **4888770**의 계산값을 산출한다.

마) 자리이동수(예:3)를 다)와 라)에서 취한 번호에 적용한다

618226 자리이동수(예:3) = **822661** , 4888770 자리이동수(예:3) = **8877048**

바) 이렇게 생성된 앞자리 숫자와 뒷자리 숫자를 텍스트 붙이기를 하여 숫자로 변환하여 **8226618877048** 오름차순으로 정렬 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예시2)**

특정번호 : 060121-4508212 소수: 253, 난수: 948, 자리이동수: 2

0601214508212\*253=152107270577636 → |060121-705776| = **645655** → 456556

705776\*948= 669075648 → |4508212-9075648| =**4567436** → **5674364**

생성숫자 : **4565565674364** 오름 차순으로 정렬 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 3) 1순위 지원에서 탈락한 자는 2-11순위 지원에서도 위 1의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된 번호에 의해 오름차순 정렬을 하여 잔여 인원을 배정한다.

**<소수·난수표>**

구분	숫자의종류	선택한 수(예시)	비고
소수	2,3,5,7	235(예시)	
난수	4,6,8,9	468(예시)	
자리이동수	1,2,3,4,5	5(예시)	

**※ 중학교 입학관련 주민등록번호 요구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VII.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 익산옥야초등학교 추진 일정

- 1) 배정원서 교부(가원서: 학부모 불펜작성) 및 작성, 제출, 주민등록등본 제출  
(무추첨 우선배정 대상자 서류제출): 2022.11.1(화)-11.4(금)
- 2) 가원서 토대로 배정원서출력 완료: 2022.11.04.(금)
- 3) 원서 확인 후 학생, 학부모 도장 날인, 제출: 2022.11.07.(월)
  - ▶ 학생, 학부모 모두 도장 날인이 원칙입니다.  
(단, 학생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 날인」도 가능하나 학부모님은 반드시 도장 날인) (꼭 원서에 적힌 보호자이름과 같은 도장 준비!)
- 4) 최종 검토 및 수정 : 2022.11.9.(수)
- 5) 본교 배정원서 교육청 제출일 : 2022. 11. 10(목) 15:00-16:30  
 ※11월 10일 원서 제출 후에는 원서 내용 절대 변경 불가※
- 6) 배정결과 발표예정: 2023. 01. 13(금) 14:00
- 7) 추가 원서 제출 : 2022. 12. 6.(화)
  - (대상: 학교장전형 중학교 미입학자나 전 가족 이주자 중 관내 중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단, 배정원서 이관 신청된 학생 제외))
- 8) 재배정 원서 제출 : 2023. 1. 26.(목) ~ 1. 27.(금)
  - 초등학교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전 가족 이주자 중 관내 중학교 전입학을 원하는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5호 조치 이상) 중 재배정 요청 학생(관련 증빙 서류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 9) 무추첨 우선배정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될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고, 서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비 고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심사위원회 심사 확정 후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 별도계획
장애체인	○ 종합병원이나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진단서 ○ 각서[서식10] ○ 거주지 약도[서식11] ○ 장애인증명서(카드)사본 ○ 주민등록등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학생본인)	
중대질병질환자	○ 종합병원급 진료 기록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사유를 입증할 만한 병명 기재)	
다자녀가정 (세 번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형,누나,언니,오빠의 중학교 재학증명서 ○ 다자녀 동일교 배정 희망원 [서식13]	- 희망자에 한함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사본	- 보훈지청에서 대상자명단을 교육지원청으로 통보에 의거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 배정

## VIII. 2023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요령

※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한글 정자로 바르게 써 주시고 꼭 부모님이 작성해 주세요.

- 1) 접수번호 쓰지 않기
- 2) 도로명주소, 성명, 정확히 쓰기(주민등록등본에 쓰여진 대로 적어야합니다.)
- 3) ‘익산시 학교군’에 표기하기(익산옥야초는 ‘익산시 학교군’에 해당함)
- 4) 학력 : 졸업예정일 (2023년 1월 6일) 기재
- 5) 소속학교 (익산옥야) 코드(29) 반번호 쓰기, 분류  
( ‘추첨’에 표시, 무추첨 우선배정 대상자는 ‘무추첨’에 표시)
- 6) 중학교 지원순위(남학생은 1순위에서 11순위까지, 여학생은 1순위에서 12순위까지 기록하되 특정학교 중복 지원불가)학교명칭, 코드번호를 정확히 기재  
(같은 중학교라도 ★남학생은 남학생 코드번호로 써 주시고 여학생은 여학생 코드 번호로 써주세요.(예: 이리동중을 쓸 경우 남학생은 13번, 여학생은 33번 기입))
- 7) 보호자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쓰기
- 8) 지원자란에 학생이름, 보호자란에 보호자 이름 적고 도장날인
  - ①★★꼭 적힌 이름(보호자명)과 같은 도장으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 ②학생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가능
- 9) 모든 순위를 다 (남학생은 1순위부터 11순위, 여학생은 1순위부터 12순위까지) 기록하여야 하며, 특정학교를 이중 지원할 수 없음  
(11개 또는 12개 지원 중학교가 모두 달라야 함)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임의 배정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와 보호자가 지게 됩니다.

## IX. 참고사항

- 1) 학부모, 학생이 선호하는 특정 중학교에 지원자가 집중될 경우, 후순위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 집과의 통학거리는 본인이 지망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전산추첨 시에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리를 적용한다면 지원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특정 학교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고, 위장전입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중학교가 배정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배정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쓰실 때 학생의 희망학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희망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타시도, 타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꼭 학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